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 등〉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96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 등	3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 등의 국가 보조	9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22인
- (2) 제 안 일 : 2025. 2. 4.
- (3) 회 부 일 : 2025. 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의 수요가 높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Ⅱ. 검토 의견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 등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및 이용요금 감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u>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신설></u>	②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u>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u>감면할 수 있다.</u>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모 ③ ----- -----
---	--

<u>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모자동실 설치·운영</u> ----- ----- -----
--	---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¹⁾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가 규정되었음.
-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²⁾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가 규정되었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되었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4년 6월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³⁾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52개소 중 4.6%에 해당함.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개소수			입실율		평균 이용요금 (2주, 일반실)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	
총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452	21	431	66.9	58.8	177	356	8.7	12.3

자료: 보건복지부('24.6월 기준, 휴업한 산후조리원 제외)

□ 개정안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는 임신부의 실수요를 뒷받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사용권 및 이용요금 감면의 근거 조항⁴⁾ 마련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됨.

3) p. 12.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4) 해당 내용은 시행령 [별표 2의2]의 내용이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의2]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2. 운영기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자체는 의무사항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이미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및 요금 감면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요금은 민간산후조리원의 그것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어서 추가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서울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므로, 재가(在家)산후조리서비스 등 다양한 산후조리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충청북도 경상남도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지원보다는 개인별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지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와 관리비용의 재정적 부담 가중이 예상되어 다수의 지자체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일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대한의사협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의 수요가 낮거나 오히려 수요 자체가 없는 지역이 존재하며,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 등이 상이한 상태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감면혜택은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임산부에게만 국한되어 보편적 복지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민간산후조리원의 요금상승의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은 미뤄두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만 확대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질 저하, 민간산후조리원 폐업 등 시장위축, 비용양극화 심화 등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악순환을 가중시킬 수 있음.
---------------	--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경비 등의 국가 보조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이용요금 감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제15조의17제1항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이용요금 감면으로 인한 예산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 정책에 관하여 국가는 지역별 차등이 없는 첫만남이용권⁵⁾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구조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는 산후조리 정책을 조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에서 경비 보조 우선 지원 대상 지역으로서 제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⁶⁾은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들에서 민간산후조리원은 5개소, 공공산후조리원은 11개소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한편, 유사한 취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제2205119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출생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바우처 제공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기획재정부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 신중 검토 필요 -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 민간시장 구축할 우려 존재 -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도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은 중복 소지 - 지자체 주도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지역	산후조리원명	개소일	임산부실	영유아실	면적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2014.2.	27	31	1,298
서울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2023.12.	12	12	1,187
울산 북구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021.7.	28	28	2,883
경기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2019.5.	13	13	1,498
경기 포천시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023.5.	20	20	2,437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2016.2.	13	15	765
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2.	10	10	1,341
강원 양구군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6.	8	8	825
강원 화천군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022.2.	5	5	603
강원 양양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2024.5	7	7	1,638
충남 홍성군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	2022.2.	8	9	580
전남 해남군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2015.9.	10	10	494
전남 강진군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2018.5.	10	10	616
전남 완도군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2019.6.	10	10	730
전남 나주시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20.12.	16	18	797
전남 순천시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022.3.	5	5	113
경북 울진군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20.9.	8	10	707
경북 김천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022.10.	12	14	1,432
경북 상주시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2023.12.	13	10	1,998
경남 밀양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022.6.	8	8	524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2013.3.	11	15	548

자료: 보건복지부